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75호

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7월 24일

서울특별시장

대상 시설물			지정(해제)사유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비고
시설물 명칭	소재지	관리주체			
암사초록길	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64-2번지	미래한강본부(시설 부)	-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[별표 1의2]의 1. 토목분야 - 바. 그 밖 의 시설물	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, 상/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* 신규 지정·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. ※ 제3종 시설물 지정·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78호

신촌지역(서대문)구역 제2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
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101호(2010.03.18)로 정비예정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95호(2014.08.21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357호(2021.07.15)로 변경된 서대문구 창천동 18-42, 30-8번지 일대 신촌지역(서대문)구역 제2-2지구에 대하여, 2025년 제5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(2025.06.19.)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
2025년 7월 24일
서울특별시 시장

I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

1. 정비구역 지정

- 1) 정비사업 명칭 : 신촌지역(서대문)구역 제2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) 정비구역 지정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정비사업 명칭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증감	변경	
기정	신촌지역(서대문)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서대문구 창천동 18-42, 30-8 일대	4,597.9	-	4,597.9	-

- 3) 정비구역을 분할,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: 해당없음
4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
결정구분	구역구분		획지 구분		위치	주용도	건폐율(%)	용적률(%) (기준/허용/상한)	높이(m)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기정	신촌지역 (서대문)구역	4,597.9	1-1	682.9	창천동 30-10일대	업무	60	600/800/-	80	
기정			1-2	1,406.7	창천동 30-8일대	판매	60	600/800/-	80	
기정			2-1	371.9	창천동 18-46일대	업무	60	600/800/-	80	
변경			2-2	1,556.9	창천동 18-42일대	업무	60	600/690/834.93	100	
기정			2-3	579.5	창천동 18-49일대	업무	60	600/800/-	60	